CR 2006 - 4

CEO
Report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2006. 2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경영상의 시사점을 도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 1

Ⅱ. 의무보험의 효용성 ····· 2
1. 법률적・사회학적 측면
2. 경제학적 측면

Ⅲ. 현황 및 과제 ····· 5
1. 운영현황
2. 의무보험의 과제

Ⅳ. 운영개선방안 ····· 11
1. 가입유도 활성화
2. 의무보험 실효성 확보
3. 보험제도의 지속정비

<붙임> 신규추진 의무보험제도 ····· 17

Ⅰ. 검토배경

□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일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거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o 잠재된 재난위험에 대해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에 이르는 일련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이며 의무보험제도는 이러한 대책에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형상 다수의 의무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o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험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험가입율의 저조, 보험종목 간 보상한도액의 상이, 사고시의 보상처리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음

o 이러한 문제점은 개별 의무보험제도의 기초법률, 소관부처, 보험가입조건이 상이한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본 보고서는 그간의 의무보험의 운영제도 점검을 통해 기존제도의 개선과 합리적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규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고자 함

Ⅱ. 의무보험의 효용성

□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은 사인(私人)간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이 존재

□ 이러한 견해는 의무화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사법상의 중요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의무보험운영의 주요 논리적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1. 법률적 · 사회학적 측면

□ 배상자력(financial responsibility) 확보

o 타인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위험이 수반되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자는 충분한 손해배상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음

o 손해배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동 이론이 의무보험의 논거로 사용될 수 있음

□ 피해자 보호장치의 강화

o 보험은 가해자의 피해보상능력을 담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장치의 역할을 수행

o 특히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무보험은 잠재적 가해자의 재무능력을 담보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 손해배상비용의 부담 적정화 도모

o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의 성숙도는 낮은 상황

- 총인구당 총보험료의 비율인 보험밀도(density)는 OECD 가입국 평균대비 21.5% 수준(구매력을 감안할 경우에는 32.8%)이며, GDP대비 총보험료의 비율인 보험침투도(penetration)는 OECD 평균대비 41.4%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1> 주요국의 보험성숙도

(단위 : US$, %)

구 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한 국	231.8(334.5)	1.56
미 국	2,062.6(2,055.6)	5.14
일 본	822.2(671.1)	2.23
홍 콩	332.9(430.3)	3.07
OECD	1,077.7(1,021.3)	3.77
한국/OECD	21.5%(32.8%)	41.4%

주 : 1) 한국과 일본은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하고 보험밀도와 침투도 산정
2) ( )은 구매력 기준
자료 : Swiss Re., Sigma, 2004년

o 재난 발생에 대비한 보험시장이 미숙한 상황에서 재난 발생시 발생하는 손해배상비용의 부담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귀착

- 따라서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함으로써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 경제학적 측면

□ 역선택 문제

o 공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로 시장실패가능성이 상존함

- 개별 가입자의 위험도를 고려한 요율차등화는 한계가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다수의 고위험집단만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보험시장 운영자체가 어려움

- 시장실패의 여부와 정도의 심각성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함

o 역선택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다수의 공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의무화는 그 타당성이 인정됨

□ 과다한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의 존재

o 보험구입자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보다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피해발생시 손해배상대상이 불특정다수인 경우 보상액책정을 위한 협상비용(negotiation cost)이 증가할 수 있으며

- 실제 손해발생액에 대한 이견으로 배상액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정 분쟁 가능성이 높음

o 따라서 과다한 거래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의 의무화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o 사고발생확률에 대한 가해자의 제한적 합리성이 의무보험 시장의 부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제한적 합리성이란 경제주체가 미래 특정사건의 발생 확률과 사건에 따른 수익(payoff)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과거경험에 의한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함

o 따라서 정보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경제주체의 제한적 합리성에 의해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정부개입을 통해 사회전체적인 후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Ⅲ. 현황과 과제

1. 운영현황

가. 의무보험의 운영개요

□ 현재 의무보험을 규정한 법률은 약 30여개이며 소관부처는 12개 부처를 상회함

o 법률상 의무보험중 책임보험은 약 20여종이며 관광사업자 등 10여종의 전문직은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토록 되어 있음

<표 2> 법률상 의무보험

보험종목	관련법규	관련부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교부
화재보험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책임보험에관한법률	재경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자부
선원근재보험	선원법	해양수산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및도선사업법	소방방재청
승강기보수업자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자부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진흥법	국무총리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환경부
항공보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건교부
운전학원 종합보험	도로교통법	건교부
건설공사보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조달청
수렵보험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교부
해외근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책임보험	건설기술관리법	건교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 손해배상법	과학기술부
항공보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건교부
복합운송주선업자가입 화물배상책임보험	화물유통촉진법	건교부
사회복지시설가입 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표 3> 보증보험 가입대상 전문직

관련법규	가입대상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자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인
세무사법	세무사
보험업법	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보험업법	보험중개사
부품소재특별법	부품・소재 생산업자
방문판매에관한법률	방문판매업자

□ FY2004 기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의무보험시장은 2,000억원 규모로 일반손해보험시장(2조 7,350억원)의 7.2%를 점유하나 신규보험(재난보험, 의사배상, 환경배상 등)도입을 감안시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됨

<표 4> FY2004 의무보험 계약실적[주1)]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약건수	보험료
화재보험(신배책)	48,762	55
가스배상보험	254,304	139
선원근재보험	767	82
체육시설업자배상보험	25,365	47
항공보험	382	493
운전학원종합(의무담보)	805	69
기술보험(국가계약)	386	555
수렵보험(의무담보)	9,285	12
적재물배상	16,834	110
해외근재	1,222	76
전문인배상	79	79
화물배상책임	892	38
원자력보험	1	173
기 타	7,057	46
합 계	366,139	1,974

주 : 1) 각 실적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종합보험의 실적을 모두 포함함
2) 전문인배상은 관광사업자, 중개업자, 감정평가업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중개사,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실적임

나. 신규 의무보험제도(붙임 참조)

□ 사회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위험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의무보험의 필요성이 등장함

o 특히 IT기술의 발전, 전문직업 위험, 환경오염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현재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예정되었거나 현재 도입이 진행중임

o 다만, 이러한 신규 의무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추세인 규제완화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정부당국의 세심한 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도입 예정 의무보험제도

o 개인대상 수상레저보험, 전자금융업자책임보험, 공인인증기관책임보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연구기관종사자 상해보험 등

□ 도입 추진 의무보험제도

o 의사배상책임보험, 재난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이 현재 도입이 추진 또는 검토 중이며, 이들 보험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다. 주요국의 의무보험제도

□ 보험제도 특성과 국가별 의무보험

o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법령 등에 의한 직접적인 의무보험보다는 보험가입을 유도·촉진하는 각종 사회적인 간접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 외형적인 의무보험은 우리나라보다 작으나 실질적으로 의무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 다만,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엄격한 통제로 재난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해당시설물 소유·관리 주체는 피해자 보상과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가입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존재함.

<표 5> 주요국의 의무보험제도

구 분	의무보험 종류
미국	법률상 의무보험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사 또는 주정부가 운영) 준 의무보험 : 홍수보험, 여객선·항공기보험, 해상유류보험
일본	선객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LP가스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
독일	철도 및 유틸리티사업자 배상책임,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약품배상책임보험
스위스	연방법 : 철도, 케이블카,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한 보험 주법 : 학교, 댐, 호텔, 야영장 등에 대한 보험

라. 의무보험제도의 특징

□ 대형 재난사고 이후 의무화가 다수 이루어짐

o 1973년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이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이 의무화되었고

o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이후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1999년 화성씨랜드 사고이후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었음

□ 일정한 체계 없이 의무보험이 늘어나면서 의무보험체계가 복잡다기해짐

o 종목간 보상수준의 차이, 미가입시 처리방안을 비롯한 가입관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표면화 됨에 따라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발생

2. 의무보험의 과제

□ 보험 사각지대 존재

o 관련 법령상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시설이 존재하여 사고발생시 보상공백이 존재

- 실제 배상자력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 또는 건물임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의 의무보험 운영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o 또한 상당수 다중이용시설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의 사각지대 존재

* 2004년 11월 기준으로 재난관리대상시설 중 조사대상 537개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비율은 27%, 책임보험 가입비율은 보종별로 11~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2004.11.3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피해액 보전에 미흡

o 현행 의무보험들은 법령에 보험가입액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액을 보전하는 데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최근 발생한 주요 대형사고의 피해자보상금 수준을 고려하면 현행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액(최고 1억원)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6> 최근 대형사고시 지급된 배상(보상)내역 요약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가스 폭발사고	대구지하철 가스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사고발생일		94.10.21	94.12.7	95.4.28	95.6.29	99.6.30	99.10.	03.2
사망자		32	12	101	501	23	57	126
부상자		17	101	201	937	3		
사망지급액	손해배상금	평균125	평균85	평균85	평균150	평균140	-	-
	특별위로금	150	120	170	170	80	-	-
	계	275	205	320	320	220	190	249

o 또한 유도선사업자, 체육시설업자의 경우 보험조건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의무보험 기능이 미약

□ 의무보험별 배상(보상)금액의 형평성 문제

o 현행 의무보험별 배상(보상)금액의 차이가 큼에 따라 보상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상레저보험은 사망기준 1인당 1억, 화재보험 신체배상책임은 사망기준 1인당 8천만원, 수련시설보험은 사망기준 1인당 6천만원임

o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발생사고의 원인가스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른 문제점(LPG사고 : 사망1인당 8,000만원, 고압가스・도시가스 : 사망1인당 6,000만원)이 있음

<표 7> 현행 의무보험종목의 보상한도액 비교

1인당 보상한도액 (사망기준)	보험종목
6,000만원	가스사고보험(LPG사고 제외),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8,000만원	가스사고보험(LPG사고), 화재보험 신체배상책임특약
1억원	자동차책임보험, 수상레저보험, 승강기보수업자보험(사고당 보상한도 있음),

□ 보험가입 관리체계의 미비

o 대부분의 의무보험은 보험가입관리 통계집적시스템의 부재로 가입율 조사와 보험미가입자의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의무보험의 가입율 조사시 외형상 가입율이 90%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함

o 현행 의무보험 중 일부는 근거법령에 보험가입 불이행시 벌칙・과태료 조항이 규정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고위험자 가입관리 대책 불비

o 수렵보험, 수상레저보험 등 가입자간 위험도 차이가 높은 종목의 경우 일부 고위험자에 대한 인수기피로 인해 민원발생과 의무보험의 취지인 피해자 보호에 문제점이 발생

Ⅳ. 운영개선방안

□ 대국민보호와 재난 등의 사고시 신속한 피해복구라는 의무보험의 목표달성을 위해 현행 의무보험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o 개선방안으로는 자발적 보험가입유도, 의무보험 실효성 확보, 보험제도의 지속정비로 대별하여 분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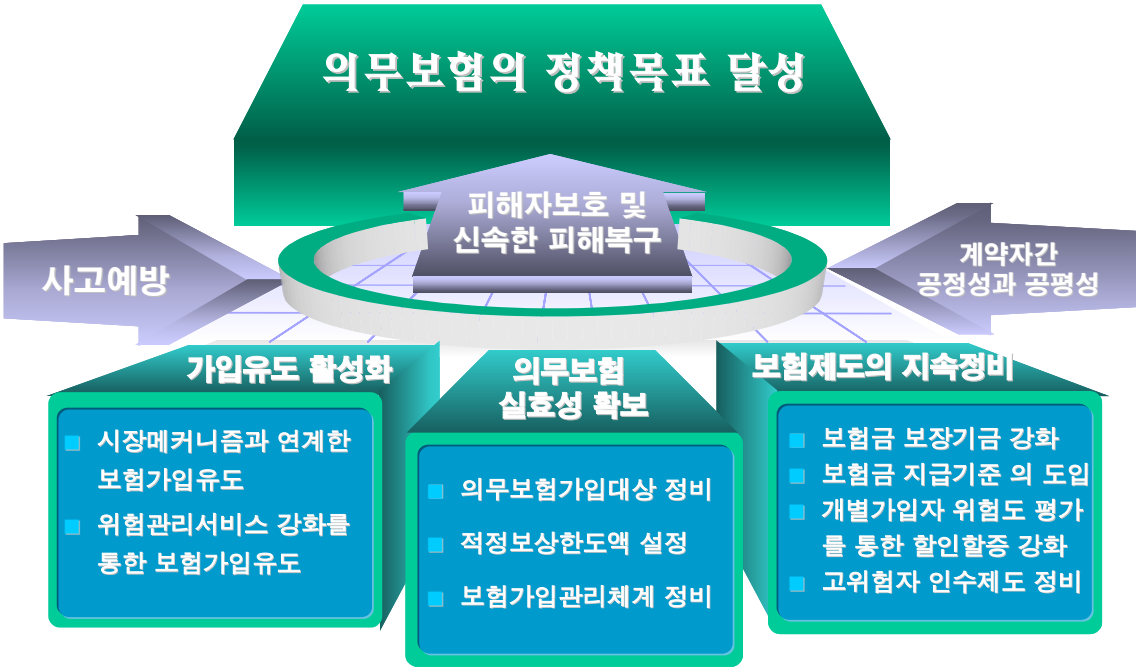

□ 현행 의무보험의 운영개선은 의무보험의 실효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이러한 제도 개선 시 의무보험의 정책목표 달성과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와 운영주체라 할 수 있는 정책당국과 보험사 공히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가입유도 활성화

□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보험가입 유도

o 이론상 의무보험의 효용성이 높은 경우에도 보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낮을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

o 따라서 국가의 정책과 보험제도를 연계하고 금융메커니즘을 통해 보험가입이 메리트로 작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음(환경오염배상과 같이 의무화가 어려운 분야)

- 국가 : 관련법에 책임소재,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
- 금융기관 : 대출이나 투자의사결정시 기업의 리스크 평가요소에 보험가입여부를 포함
- 기업체 : 리스크관리를 위한 자율적 보험가입

<그림 1>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와 자율환경관리 제도(안)

자료 : LG환경연구원, 2004, 자율환경관리와 금융기관 신용평가

□ 위험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험가입 유도

o 의무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므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 사전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보험서비스가 타 기업성 보험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o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가입에 따른 위험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 보험가입자 역시 보험료부담수준과 함께 위험관리서비스의 질에 따라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임

2. 의무보험 실효성 확보

□ 의무보험 가입대상 정비

o 보험가입의무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에서 "다수인명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가진 사업장"으로 정비

o 보험가입제외대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Negative시스템으로 전환하되 영세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대상 범위는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임

- 특히 가스사고 등은 그 특성상 사용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대상 사업장 기준을 대폭 하향할 필요성이 있음

□ 적정보상한도액 수준의 확보

o 국민경제의 발전과 피해자의 권리의식 확대로 인한 현행 사망기준 6,000~8,0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은 실제 피해액 보전에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o 그 수준은 단기적으로 자동차책임보험수준인 사망 1인당 1억원 수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주요경제활동인구의 사망평균지급보험금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주요경제활동인구(20~50세)대상 자동차보험의 평균지급보험금은 약 136백만원 수준이고 무과실 기준은 181백만원으로 추정(2004년 기준)

- 다만 이 기준은 인명피해를 담보하는 재난관련 의무보험의 기준이고, 전문직관련 의무보험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상한도액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법령에 보험가입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체육배상책임보험과 유도선배상책임보험은 가입기준을 법령에 신설 필요

□ 미가입자 확인·통지시스템 구축

o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자료의 상시취합기능을 마련, 미가입자 확인·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o 보험가입률 상시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행정과 보험의 전산망을 연계·구축 필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보장보험법 제6조의2에 의거 보험가입자가입관리 전산망을 운영중에 있음

<그림2> 보험가입확인 시스템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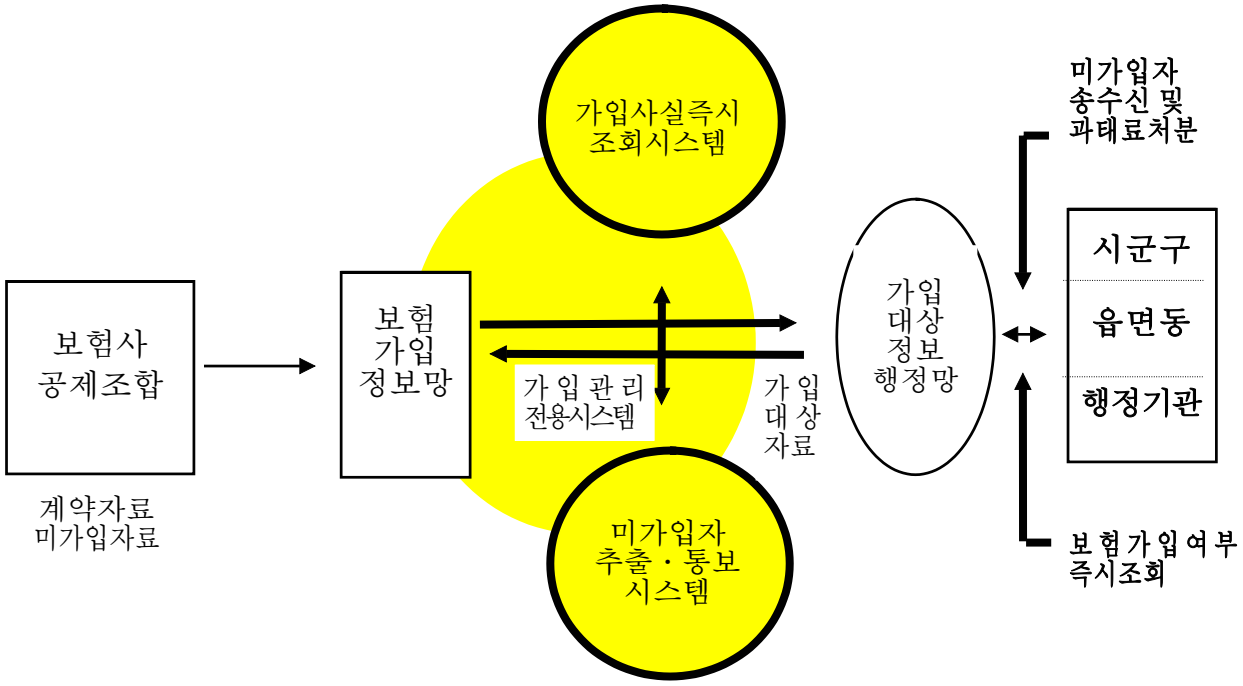

- 다만 이러한 미가입자 점검 시스템은 시스템 도입의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비용대비 효율성이 있는 종목(계약 및 사고의 규모가 상당한 종목)에 한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보험가입확인제도의 강화

o 현재 일부종목(유도선업자배상책임보험, 수상레저보험 등)에서 시행중인 사업개시전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등)를 사전에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확대

o 근거법령에 보험가입불이행시 벌칙·과태료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승강기보수업자보험, 수렵보험 등) 이를 신설하고

- 벌칙조항 등이 있더라도 대부분 과태료 300만원 이내의 소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적정액으로 인상하고 면허·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도입강화 필요

3. 보험제도의 지속정비

□ 보험금 보장기금제도(Guarantee fund) 강화

o 일부 의무보험관련 법령은 운영주체를 보험 또는 공제로 명시하여 의무공제를 허용하거나 공제만 단독 허용하고 있음

o 보험업법은 의무보험의 경우 파산 등에 대비한 보험금 지급보장을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출연금 납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공제는 이러한 보장제도가 불비된 상황임

o 보험회사와 공제간 보험금 보장기금 설치유무에 따라 사고발생시 피해자보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공제기관도 보험업법의 적용이 필요

□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도입

o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과 불필요한 분쟁억제를 위해 법령 등에 보험금지급기준과 최저보험금제도 등을 규정

o 또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분납특약을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초회보험료 납부이후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방지

□ 할인·할증제도 활성화

o 사고예방기능강화와 위험도에 따른 공평한 요율차등을 유도하고 보험계약자의 위험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과거실적에 의한 할인·할증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바람직하며

- 이를 위해 관련자료의 집적 및 교환을 위한 할인·할증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또한 실적에 의한 할인·할증제도와 더불어 현재 가스사고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이용되는 사전 안전점검 제도를 통한 요율의 할인·할증방안은 타 의무보험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고위험자 인수제도 정비

o 보험가입측면에서 고위험자에 대한 적절한 인수방안 없이 인수거부만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수거부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o 또한 인수거부 금지 또는 제한시 고위험자에 대한 가입대책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적정한 할증제를 통해 보험사의 인수거부를 방지하고 공동인수제 등 다양한 인수제도*를 검토

* 공동인수제도(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 자동할당제도, 재보험, 기금제도 등

<붙임> 신규추진 의무보험제도

1. 도입예정 의무보험

□ 개인대상 수상레저보험

o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005.3)으로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등록 및 검사제 도입과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시행일자 2006.4.1)

o 이에 따라 기존 수상레저사업자외에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20마력이상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30마력이상 고무보트)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됨

□ 전자금융업자책임보험

o 전자금융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토록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음

* 관련법률 : 전자금융거래법(안) 12월6일 국회재경위 금융심사소위 통과

o 현재 관련 보험으로 e-biz@배상책임보험, Netsecure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나 동 보험은 해킹에 대비한 전용보험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보험가입조건에 의한 별도 의무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공인인증기관책임보험

o 전자서명법의 개정(2005.12)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자서명이용자 보호수단이 마련됨

o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등 6개업체*가 운영중이며 금융결제원의 점유율이 70%이상인 과점시장임(2005.12 기준)

* 금융결재원,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공인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 변호사배상책임보험

o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가 유도되고,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의무보험제도가 신설됨

o 보험 또는 공제의 최저 보상한도액(시행령 제13조의4)

-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잔여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함

o 현재 보험업계는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협을 대상으로 단체계약을 인수하고 있으며 상품내용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연구기관종사자 상해보험

o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일 : 2005.3.31, 시행일 2006.4.1)이 제정되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함

o 보험내용

- 보험의 종류 : 연구실 사고 상해보험·사망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 보험가입조건(안) :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이상, 상해부상 및 후유장해 급별표에 정한 금액

* 법 제21조는 안전점검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증보험 등에 가입토록 하고 있음 : 시행규칙(안)은 보증금액 2천만원에 점검에 참여하는 자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음

o 연구실법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는 약 28만여명으로 추산됨 (2002년말 기준)

2. 도입추진 의무보험

□ 의사배상책임보험

o 각종 의료사고시 분쟁해결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자에게는 피해의식과 불신을 해소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현재 계류중임

o 보험내용

- 의료사고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의료기관의 보험가입의무, 종합보험가입시 공소권제한,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의 조성 등임

- 입법시안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한 종합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2003년말 기준 의료기관 46,000여개, 의료종사자 약 35만명

** 2004년 기준 소비자보호원 접수 의료사고 상담건수 10,300여건, 의료소송비용 2천억원 수준(KBS뉴스 보도)

□ 재난보험

o 재난보험의 도입필요성은 대구지하철 사고이후 재난리스크의 종합관리방안으로 대두되어 꾸준한 검토가 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KDI의 도입타당성연구 용역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o 다만, 신설기관인 소방방재청은 주로 자연재해리스크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인적재난분야는 장기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된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보류되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화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o 보험내용

- 현행 화재보험법에서는 리스크를 “화재”로 한정하고 있으나 재난보험의 경우 발생가능한 모든 리스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화재, 폭발, 붕괴위험이 주종이 되나 상주시 콘서트장 압사사고(2005.10.3 사망 11명, 부상 26명)와 같은 비정형적 사고에 대한 피해보전이 가능해 짐

- 대상시설은 재난보험의 효용성증가를 위해 현행 화재보험법상의 특수건물을 재난관리시설(가칭)로 확대하되 일부시설을 제외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o 환경부는 2005년 11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환경책임제도를 강화하고 환경분쟁 관련 제도개선책으로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중장기과제로 발표

o 동 계획은 국가의 환경정책과 보험을 연계하고 금융메커니즘을 통한 보험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음

- 에너지·자원 관련법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보험제를 검토하여 재정책임 내지 책임보험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 규정

- 금융권의 환경펀드조성을 유도하여 동종업종에서도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에의 투자를 유도하고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추진

o 보험업계는 부동산거래와 연관된 토질오염 등 시장수요가 있는 분야의 상품개발 및 언더라이팅 정보를 축적하고 환경오염리스크의 관리방안으로서의 보험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CEO Report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 행 일	2006년 2월
발 행 인	김 창 수
편 집 인	이 득 주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손해보험본부 특종보험팀(☏368-4198)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